

건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1. 건축허가 분야

- ◆ 건축허가나 승인업무는 법정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하고 그 결과를 1차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서면 통지하여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- ◆ 업무처리기간이 1주일이상 소요되거나 타부서 협조에 의한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는 반드시 중간처리상황을 3일 이내 통보해드리겠습니다.
- ◆ 각종 건축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건축사 감리업무를 내실화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◆ 건축물 양성화 및 노후불량주택의 개·보수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- ◆ 연 2회 조정시설 정기점검을 통해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2. 무허가 건축물 분야

- ◆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건축법질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3. 재개발·재건축·주거환경개선 분야

- ◆ 관내 재개발·재건축·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행정지원하겠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4. 공동주택 관리 및 아파트·주택 사업승인 분야

- ◆ 공동주택에 대해 1주일씩 소요되는 하자보수 처리기한을 시공업자와 협의를 통해 5일이내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,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즉시 하자보수보증증권 수령안내 및 주택하자의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리후렛 작성 배부 등으로 하자보수 절차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◆ 주택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업무연찬을 분기1회 실시하겠습니다.
- ◆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입주예정자에 의한 『입주전 사용검사』를 실시하여 입주민에 대한 주거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5. 건축물대장 관리

- ◆ 건축물의 재원과 권리관계를 등록한 대장은 소유권이나 표시사항 변경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소로부터 등기사항이 통보된 후 2일 이내에 대장정리를 하여 항상 최신정보가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.

6. 서비스별 접수·문의창구

서비스명	담당	전화번호	팩스 (FAX)
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·징수	건축행정담당	220-4581~6	220-4619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관리	주택담당	220-4601~6	
건축허가 건축물 환경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	건축담당	220-4591~7	
재개발,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	재개발담당	220-4611~5	
영선업무	건축지원담당	220-4791~4	

7.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

- ◆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통하여 건축법 질서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◆ 아름다운 사하 가꾸기를 위해 건축물의 디자인, 외관 및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 되도록 계획하여 주시고, 도심내 회색옥상바닥에 초록색 인조잔디깔기를 조성하여 불량옥상을 옥상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, 나아가 푸른 도시환경을 창출코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